

주민조례제정청구

【6】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3.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안이유

양주시의료원 설립, 주민조례제정 청구와 관련하여 자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거 주민조례제정청구 “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주민조례제정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덧붙여 의회에 부의 함.

□ 주요골자

1. 주민조례제정청구안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안으로 “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 함.

○ 조례”안“ 주요골자로

- 의료원 명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의료원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수가 및 수수료등을 규정함 (안 제6조)
-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2. 조례제정에 따른 양주시 의견

○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으며, 우수한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와 이직률, 현재 운영중인 경기도립의료원등 자치단체 의료원의 경영악화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성남시 (2006.3.31)가 유일하나 현재까지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열악한 의료시설 및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양주시의료원 설립이 필요 하나 시립의료원 설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부지확보, 우수한 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성, 운영중인 타시군 의료원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은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의견임.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_(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양주시 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의 위치는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3조 (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수행
 7.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을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 ① 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이사로 추천될 수 있는 공무원은 의료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과 시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한다.

제5조 (원장) 원장 임용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보건·의료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의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
6. 병원 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6조 (수가 및 수수료 등)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 수가 및 각종 수수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수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등) ①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기구의 증설 및 정원의 증원
2. 인사 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복리후생기준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과태료) ①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드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기타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기타 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사업개시)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의료원 설립이 완료된 날부터 개시한다.

- 조례”안“ 주요골자
 - 의료원 명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의료원의 명칭을 양주시 의료원으로 함
 - 의료원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지역주민의 의료사업,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등
 - 수가 및 수수료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의료 수가 및 각종 수수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함.
 -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조례제정에 따른 양주시 의견 심의

-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으며,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와 이직률, 현재 운영중인 경기도립 의료원등 자치단체 의료원의 경영악화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성남시(2006.3.31)가 유일하나 현재까지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열악한 의료시설 및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양주시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나 시립의료원 설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부지확보, 우수한 인력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성, 운영중인 타시군 의료원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의견으로 본 의견을 덧붙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하고자 함.

주민조례제정청구 조례안 : 불임참조

관계 법령 발췌서: 불임참조

기타참고사항

-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양주시립의료원 설립 및 경기도립의료원 운영등 현황

양주시의료원 설립 주민조례제정청구“안” 심의

□ 건 명 :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조례 제정청구안 심의)

□ 개 요

- 청구 조례명 :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취지 및 이유: 양주시의 열악한 의료시설 및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시립의료원 설립 필요
- 주민조례제정청구 요건(서명인수 총족) 수리: 2007. 1.22.
- 심의 요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거 주민조례제정청구“안”을 의회에 부의 하기에 앞서 조례“안”검토와 양주시의 의견 심의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조례규칙심의 위원회 상정

- 심의일자: 2007. 3.15.(목)
- 심의안건
 1. 주민조례제정청구안 양주시의회 부의
 - 조례명: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거법령: 자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검토결과:
 - 당초 제출된 주민조례제정청구 조례“안”이 법령과 상치되는 내용이 있어 시민대표에게 의견을 제시한 결과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변경조례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변경제출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하고자 함.

조례 제2044호 (2006.03.3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성남시 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의 위치는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을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탁·임대·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의한 이사로 추천될 수 있는 공무원은 의료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과 시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한다.

제5조(원장) 원장 임용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4년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보건·의료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
6. 병원 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6조(수가 및 수수료 등)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 수가 및 각종 수수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수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 ①시장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기구의 증설 및 정원의 증원
2. 인사 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복리후생기준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위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기타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2조(시행규칙) 기타 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척 (2006.03.31 조례제2044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업개시)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의료원 설립이 완료된 날부터 개시한다.

양주시립의료원 설립 및 경기도립 운영 현황

□ 양주시립의료원 설립등에 관한 의견

○ 양주시 일반현황

- 인구----- 175,737명
- 면적----- 310.31km²
- 행정구역----- 1읍 4면 6동 203통·리
- 재정규모----- 3,275 (재정자립도 37%)
- 학교----- 41개교 24,752명(초27, 중15, 고1)
- 기업체----- 1,640개 업체, 28,079명
- 의료기관-----

구분	계	일반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요양 병원	
기관수	91	2	44	23	18	1	

○ 타시군 의료원등 비교분석 현황

구분	성남시(설립중)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연천군의료원
종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인구수	977,166	410,938	46,075
부지(평)	21,069	1,813	9,940
병상수	500	242	100(50사용)
설립예산액	1,875억원		
진료과목	내과,신경과등 22개	내과,소아과등 17개	내과,소아과등 10개

※ 성남시립 의료원 설립 추진상황(2007. 1월 기준)

- 2006. 03. 15: 성남시의회 조례 의결
- 2006. 04. 17: 성남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용역
- 2006. 10. 25: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재 검토 통보
- 2007. 01. 01: 대체부지 및 예산 미확보

○ 양주시립의료원 설립등에 관한 의견

◇ 의료원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의견

-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군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은 없음
-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설립 조례제정: 성남시외 없음
 - 2006. 3. 31일 성남시에서 제정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에는 제정된 시군이 없음
- 보건복지부 의료원 설립 지원 방침
 - 신규의료원 설립의 경우 임대형민자(BTL)사업에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의료원 운영 현황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4개 의료원중 2004년 현재 30개소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05년도 6개 의료원의 운영 결과 약 54억7천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음
 -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의료원의 경우 경영악화 및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우수의료인력 공급의 한계로 신규의료원 설립은 지양되고 있음.
- 양주시정조정위원회 의견
 - 2007. 1.22일 주민조례제정청구 요건 구비 수리 결정시 양주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음.
 - 경기도립의료원 유치 검토
 - 조례제정 시행시 재정 충당의 가능성에 사전 검토되어야 함
 - 민간자본의 종합병원과 양주시의료원간의 경쟁력 비교 검토 필요

◇ 양주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우리시 의견

- 시·군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으며 신규 지방의료원 설립도 다음과 같은 사유등으로 설립을 자양하고 있음.

-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와 이직률이 민간병원에 비해 높고
- 현재 운영중인 자치단체 의료원의 경우 경영악화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이 지속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성남시 (2006.3.31)가 유일하나 현재까지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양주시립의료원 설립에 따른 예산과 부지확보, 사업성, 운영중인 의료원등을 검토한 결과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병원·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유치

○ 종합병원 유치 방안

- 양주시 옥정지구 택지개발지역에 종합병원 부지가 계획되어 추진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및 노령화 사회대비 실버타운들과 연계하여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유치방안

-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은 1976년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의정부시에 설립된 병원으로 현재 30여년이 경과되어 건물과 시설 등이 노후화 되고 매우 협소한 실정임.
- 경기북부를 잇는 중심지에 있는 양주시 행정타운 예정지구내(신도시 개발지구)로 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양주시 의료기관등 현황

(기준일 : 2006. 12월 현재 단위 : 개)

구 분	계	일반 병원	한방 병원	치과 병원	정신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요양 병원	보건 소	보건 지소
합 계	기관수	91	2	-	-		44	23	18	1	1
	병상수	571	228				269			74	
백석	기관수	10					6	2	2		
	병상수	73					73				
은현	기관수	2					-	-	1		1
	병상수										
남	기관수	4					2	1	1		
	병상수	29					29				
광적	기관수	7					4	2	1		
	병상수	28					28				
장흥	기관수	4					1	1		1	1
	병상수	74							74		
양주1	기관수	3						1	1		1
	병상수	-									
양주2	기관수	10					5	3	2		
	병상수	-									
회천1	기관수	8	1				4	1	2		
	병상수	122	50				72				
회천2	기관수	23	1				13	5	4		
	병상수	225	178				47				
회천3	기관수	19					8	7	4		
	병상수	6					6				
회천4	기관수	1					1				
	병상수	14					14				

○ 의료종사자 현황

(기준일 : 2006.12.30 현재, 단위 : 명)

구 分	합계	백석	은현	남	광적	장흥	양주1	양주2	회천1	회천2	회천3	회천4
총 계	447	44	18	19	32	38	4	35	36	82	135	4
의사합계	111	10	5	4	7	7		13	7	21	35	2
의사	67	6	4	2	4	6		4	4	13	22	2
한의사	19	2	1	1	1	-	-	4	2	4	4	-
치과의사	25	2	-	1	2	1	-	5	1	4	9	-
약사	52	6	5	4	5	4	1	6	5	10	5	1
간호사	45	3	1	1	1	11			1		26	1
조산사												
조무사	168	18	2	6	14	13		16	14	37	48	
의료기사	71	7	5	4	5	3	3		9	14	21	

□ 경기도립 의료원 운영 현황

○ 현 황

명 칭	구 분	소재지	부지면적 (㎡)	건물면적 (㎡)	병상수
의정부의료원	종합병원	의정부2동 433	5,983 (1,813평)	10,967 (3,323평)	242
안성의료원	종합병원	당왕동 455	8,384 (2,540평)	8,334 (2,525평)	120
포천의료원	종합병원	포천읍 신읍리 243-4	27,048 (8,196평)	8,677 (2,629평)	164
수원의료원	병 원	장안구 정자동 886-9	14,189 (4,299평)	8,680 (2,630평)	142
이천의료원	병 원	관고동 215	12,882 (3,903평)	6,080 (1,842평)	112
파주 병원	병 원	금촌동 798	16,836 (5,101평)	3,264 (989평)	160

○ 경영실적(적자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운영적자	의정부	안 성	포 천	수 원	이 천	파주(금촌)
2005	54억7천	4억8천	18억2천	10억6천	7억1천	4억4천 흑자	18억4천
2004	82억4천	21억	9억6천	16억6천	4억4천	15억3천	15억5천

※ 2005년도 이천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원은 적자가 발생되었음

○ 의정부의료원 이전계획

- 이전계획:

⇒ 미군기지 이전 공유지: 미군기지 공유지 약 6천평에 의정부의료원 이전을 포함한 다각적인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하고 있음

□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

○ 현황

- . 위 치 : 미정
- . 대지면적
 - 당 초 : 23,882㎡ (7,224평)
 - 변경계획 : 69,654㎡ (21,069평)
 - 사유지 9,288평 매입 및 시유지 4,557평 편입
-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2종)
- . 병상 수 : 500병상
- . 연면적 : 23,800평 (지하3층, 지상10층)
- . 주차대수 : 1,000대
- . 총사업비 : 187,500백만원
- . 사업기간 : 2007년 ~ 2014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행정소송 예상 감안시)

○ 추진상황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05. 11. 15 : 주민조례 청구 (하동근 등 18,845명)
- 2006. 03. 15 : 시의회 조례 의결

【성남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 2005. 12. 20 : 용역 착수 (수탁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6. 02. 23 ~ 3. 22 : 중간보고회, 토론회, 주민설명회, 최종보고회
- 2006. 04. 17 : 용역 완료

【성남시 의료원 건립】

- 2006. 04. 27 : 성남시 의료정책자문위원회 (성남시의료원 건립 결정)
- 2006. 05. 02 : 국비보조금 신청 (56,000백만원 중 2007년 11,200백만원)
- 2006. 05. 17 : 성남시의료원건립 BTI사업 신청
- 2006. 07. 04 : 성남시의료원건립 예비타당성조사서 제출
- 2006. 08. 04 : 도비보조금 신청
- 2006. 08. 24 :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 민간투자 방식(BTI)에서 시 재정투자방식으로 전환 결정
- 2006. 10. 25 :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재 검토 통보
- 2006. 10. 30 :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업무보고시 성남시 의료원 대체부지 검토상황 보고

* 2007. 1. 1 현재 의료원 설립에 따른 부지 및 예산 미확보

□ 지방의료원 운영 현황

○ 지방의료원 운영 업소 수

총계	경기도	서울시	부산	인천	대구	충남	충북	경남	기타
34	6	12	1	1	1	3	2	2	6

○ 지방의료원 연도별 적자 발생 추이

(단위 : 억원)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적자 금액	410	790	369	487
적자 의료원수	26	30	27	30

○ 지방의료원 운영 형태

-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악화와 비효율적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 법인으로 통합되는 추세임 (2005년 6개의 도립의료원 단일법인 통합)
- 경영악화 및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우수의료인력 공급의 한계로 신규 의료원 설립은 자양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 운영의 장·단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의 개선 공공의료기관 보유를 통한 시 보건의료 역할 기대 총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병원 운영상의 재정 적자 우려 우수한 의료인력의 확충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들의 이직률이 민간병원에 비해 높음 -근무환경으로 인해 의사인력 확보 어려움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역량에 대한 우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 (지방의회에의 부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 및 등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